

<민법총칙 기본서 수정사항>

p281 22번~p282 38번까지 해설 삭제 후 다음으로 대체

- 22. ○ 판례
- 23. ○ 397조 2항
- 24. ○ 397조 2항
- 25. X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의 근친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. (판례)
- 26. ○ 판례
- 27. X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는 양립할 수 있다. (389조 4항)
- 28. X 대체집행은 철거 등 하는 채무 중에서 대체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.
- 29. ○ 판례
- 30. ○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입증을 요하지 아니한다.(판례)
- 31. ○ 판례
- 32. X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취지에 반한다.
- 33. X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는 특별손해도 포함되어 있다.(판례)
- 34. X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.(판례)
- 35. X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.(판례)
- 36. ○ 398조 2항
- 37. X 근로계약은 그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할 수 없다.(근로기준법)
- 38. X 이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므로 그 금액이 지나치면 감액할 수 있다.

끝